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9호, 2024. 5. 7. 제정]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042-481-4981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변경)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및 관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연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3. 그 밖에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③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④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3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3.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4. 그 밖에 보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 및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제4조(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자연유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연유산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
 -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
7.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연유산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자연유산위원회 전문위원) ①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해촉(解囑)으로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전문위원의 해촉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자연유산위원회의 운영) ①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자연유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자연유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2. 지질·지형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3. 명승·전통조경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및 같은 조 제9호의 전통조경에 관한 사항

-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명의 위원을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제11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자연유산위원회는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자연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자연유산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위원회등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사·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회의록이 공개되면 조사·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유산위원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제15조(자연유산의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해당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사목적 및 조사배경
2. 조사기간, 조사자,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3. 그 밖에 해당 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열람 또는 대출

③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해야 한다.

1.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경과,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자연유산의 유형별 현황 및 특성
3. 자연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대한 주요 위협 요인
4. 조사대상 자연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그 이력
5. 조사대상 자연유산의 소재지 및 그 이력
6. 조사대상 자연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제출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활용해야 한다.

제16조(건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의견 청취)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1.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시·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10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제1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구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제17조(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천연기념물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水系)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2. 천연기념물등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천연기념물등이 서식·번식·도래하거나 군락을 이루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등의 등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등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천연기념물등의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8조(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자연유산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천연기념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9조(명승의 지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지정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3조(천연기념물·명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2. 천연기념물·명승이나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곤란한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

제2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조정)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려는 경우(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지정해제 또는 조정은 제외한다)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지정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의 지정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3. 지정의 취지 및 이유

제26조(지정 해제 등의 절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 해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7조(허가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직접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행위
2.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허가대상 행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 다.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
 - 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경고판, 표지돌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 마.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바. 수목의 가지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관리
 - 사. 학술·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2.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표본 또는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행위
3.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4. 제3항 각 호의 행위

5.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토지·수면의 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천연기념물(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내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 등을 신축·개축(改築)·증축·이축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3. 토지·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 또는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4.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5.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6.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7.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
8. 토석·골재·광물 또는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 또는 제거하는 행위
9. 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탁본, 촬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천연기념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추락 등으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제29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 등) ①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내주는 경우(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서를 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내주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서를 내준 경우(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서를 내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30조(허가를 위한 조사)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시·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4.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원,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법 제21조제

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소각
2. 천연기념물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제32조(동물의 수입·반입 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국외 수입·반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수입·반입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수입·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반입 신고대장을 작성·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수입·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반입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
4. 동물의 증명, 성별, 나이, 무게 및 수입 수량 등에 관한 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제3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① 법 제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행정명령)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기한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말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 또는 훼손된 안내판 등의 방치 행위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의 방치 행위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방치 행위
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산불 진화 또는 산림병충해 방제 행위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반출 행위
 3. 천연기념물인 동물 또는 식물의 질병 감염이나 개체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동물·식물의 포획·채취 행위
 4. 제2항제3호에 따른 생물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 행위
- ④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수량, 조치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5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해야 한다.

제36조(관리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
 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수목원 또는 정원
 7.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②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최근 3년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
- ③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한 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7조(정기조사·추가조사의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는 조사(이하 "추가조사"라 한다)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천연기념물인 동물·식물의 개체 수 증감 및 서식·번식 등의 환경
 2. 천연기념물인 동물·식물의 해당 종이 지닌 생태적 특성과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또는 군락지의 현황
 3. 천연기념물인 동물·식물의 보존·관리·활용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4.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자연경관·지질 등 조사대상 공간 및 생성물의 특성·현황
 5. 조사대상 지역의 기후변화 현황
 6.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② 정기조사와 추가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 및 추가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정기조사와 추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7.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정기조사와 추가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한 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9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입)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시험·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반입하려는 동물이 중성화 수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경우
3. 품평회 참가 등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홍보에 필요한 경우
4.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식표가 부착된 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40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사무소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관리사무소의 장기·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관리 현황 및 활용 전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천연보호구역의 상시적·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리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보호구역의 동물·식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군락지를 포함한다), 지형·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이하 “천연보호구역자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2. 천연보호구역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
3. 천연보호구역의 생태계, 시설물, 주변 환경의 보존·관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수립 절차와 관리사무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명승의 소유자등이 명승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기간 및 계획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계획기간: 10년
2. 계획범위: 명승으로 지정된 면적 및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절차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해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재해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 대피경로·대피방법 등을 명시한 안내판 또는 출입 통제를 위한 울타리·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나. 하천·연못 등의 준설, 화재·산사태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다.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천연기념물의 이동·보관 또는 보호에 관한 사항
2. 재해의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수목의 식재, 환경정화 등 재해 복구에 필요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나. 재해가 발생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복구를 위하여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재해의 방지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 방제 또는 거름주기
2. 자생 초화류(草花類)를 심거나 기존 연못 등을 준설하는 행위
3. 자연경관 등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4.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표본 및 박제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2. 법 제17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행위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4조(시·도자연유산 등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2. 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나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곤란한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

제45조(통지)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6조(자연유산 관리협약의 체결방법 등) ① 천연기념물등(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협약안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리협약의 명칭

2. 관리협약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관리협약의 목적
4. 관리협약의 내용
5. 관리협약을 체결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성명·명칭과 주소
6. 관리협약의 유효기간
7. 그 밖에 관리협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협약안을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리협약안을 제출한 자와 관리협약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해야 한다.
-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조정을 완료하여 관리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47조(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행)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기념물·명승 또는 그 유전자원의 보존·관리·활용이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 지원 사업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 나.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개요
 2. 사업목적
 3.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4. 재원확보계획 및 총 지원금액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48조(손실의 보상)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타인 토지 등에 대한 출입,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표본 채취나 그 밖의 조사행위로 토지·시설물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액
2.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
 - 나.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원래의 목적대로 보존·관리 또는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액
3.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원래의 목적대로 보존·관리 또는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액.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의 손실액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고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상금액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34489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27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각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③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27조”를 “제13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31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각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동물

가. 나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역사적 가치

가)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나) 문헌, 기록, 구술(口述)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문화 또는 민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2) 학술적 가치

가) 석회암 지대, 사구(砂丘: 모래 언덕), 동굴, 건조지, 습지, 하천, 폭포, 온천, 하구(河口), 섬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生長)하는 동물·동물군 또는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로서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나) 분포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동물군 또는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로서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다) 생태학적·유전학적 특성 등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라) 우리나라로 한정된 동물자원·표본 등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

3) 그 밖의 가치

가) 우리나라 고유동물은 아니지만 저명한 동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나) 우리나라에서는 절멸(絶滅: 아주 없어짐)된 동물이지만 복원하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다)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1) 동물과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등

2) 동물자원·표본 등

3) 동물군(척추동물의 무리를 말한다)

2. 식물

가. 나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역사적 가치

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고유의 식물로 저명한 것

나)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또는 민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다) 전통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된 고유의 식물로 지속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는 것

2) 학술적 가치

가) 국가, 민족, 지역, 특정종, 군락을 상징 또는 대표하거나, 분포의 경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온천, 사구, 습지, 호수, 늪, 동굴, 고원, 암석지대 등 특수한 환경에 자생하거나 진귀한 가치가 있어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3) 경관적 가치

가) 자연물로서 느끼는 아름다움, 독특한 경관요소 등 뛰어나거나 독특한 자연미와 관련된 것

나) 최고(最高), 최대, 최장, 최소(最小) 등의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식물인 것

4) 그 밖의 가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1) 노거수(老巨樹): 거목(巨木), 명목(名木), 신목(神木), 당산목(堂山木), 정자목(亭子木) 등

2) 군락지: 수림지(樹林地), 자생지(自生地), 분포한계지 등

3) 그 밖의 유형: 특산식물(特産植物),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유용식물(有用植物), 초화류 및 그 자생지·군락지 등

3. 지형·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가. 나목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학술적 가치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거나 지질현상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것

나) 암석의 변성·변형, 퇴적 작용과 관련한 특이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다)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지질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인 것

라) 화석 종(種)·속(屬)의 모식표본(模式標本: 특정 화석 종을 대표하는 표본)인 것

- 마) 발견되는 화석의 가치가 뛰어나거나 종류가 다양한 화석산지인 것
- 바)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거나 지질시대의 변성·변형, 퇴적 등 지질환경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지질구조인 것
- 사) 지질구조운동, 화산활동, 풍화·침식·퇴적작용 등에 의하여 형성된 자연지형인 것
- 아) 한국의 특이한 지형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육상 및 해양 지형현상인 것

2) 그 밖의 가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 1) 암석, 광물과 지질경계선: 어란암(魚卵岩),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중심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성장하여 만들어진 결정의 형태) 구조를 갖는 암석, 지각 깊은 곳에서 유래한 감람암(橄欖巖) 등
- 2) 화석과 화석 산지
- 3) 지질구조 및 퇴적구조
 - 가)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 나) 퇴적구조: 연흔(漣痕: 물결 자국),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빗방울 자국) 등
- 4) 자연지형과 지표·지질현상: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하안단구, 폭포, 화산체(火山體), 분화구, 칼데라(caldera: 화산 폭발로 분화구 주변에 생긴 대규모의 움푹한 곳), 사구, 해변(海濱: 해안선을 따라 모래, 자갈, 조개 껍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지형), 갯벌, 육계도(陸繫島: 물과 잘록하게 이어진 모래섬),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퇴적물이 만의 입구를 막아 바다와 분리되어 생긴 호수), 카르스트 지형(화학적 용해 작용으로 생성된 침식 지형), 석회·용암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에(海蝕崖: 파도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해안 절벽), 선상지(扇狀地: 산 아래의 평원에 하천이 운반한 모래, 자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부채꼴 모양의 지형), 삼각주, 사주(砂洲: 바닷가에 생기는 모래사장), 사퇴(砂堆: 모래 퇴적물), 토르(tor: 풍화작용에 따라 기반암과 분리되어 그 위에 남겨진 독립적인 암괴), 타포니(tafoni: 풍화작용으로 암석 표면에 움푹 파인 구멍들이 벌집처럼 모여 있는 구조), 암괴류, 얼음골, 풍혈(風穴: 서늘한 바람이 늘 불어 나오는 구멍이나 바위틈), 온천, 냉천, 광천(鑛泉: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샘) 등

4. 천연보호구역

동물·식물이나 지질·지형 등 자연적 요소들이 풍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

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것

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명승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

- 1)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 2) 시대나 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 3)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나. 학술적 가치

- 1) 대상의 고유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각 구성요소가 완전하게 남아있는 것
- 2) 자연물·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가치가 있는 것
- 3) 위치, 구성, 형식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진실한 것
- 4) 조경의 구성 원리와 유래, 발달 과정 등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

다. 경관적 가치

-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
- 2) 자연 속에 구현한 경관의 전통적 아름다움이 잘 남아 있는 것
- 3) 정자·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라. 그 밖의 가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2.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 1) 산지, 하천, 습지, 해안지형
- 2) 저명한 서식지 및 군락지
- 3) 일출, 낙조 등 자연현상 및 경관 조망지점

나.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 1) 정원, 원림(園林) 등 인공경관
- 2)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마을, 옛길 등 생활·생업과 관련된 인공경관
- 3) 사찰, 서원, 정자 등 종교·교육·위락과 관련된 인공경관

다.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 1) 명산, 바위, 동굴, 암벽, 계곡, 폭포, 용천(湧泉), 동천(洞天), 구곡(九曲) 등
- 2) 구비문학, 구전(口傳) 등과 같은 저명한 민간전승의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지정기준
1. 보호물	가. 건물 또는 보호울타리, 방음벽 등의 시설물 및 그 밖에 천연기념물·명승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천연기념물이 전시·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2.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가. 동물, 지형·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 보호구역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나.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구역
3. 명승의 보호구역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또는 복합경관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	가. 보호물이 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 보호물이 시설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비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표에 따른 지정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제8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법 제70조제3항	100	150	200

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21조제1항제5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1항	300	400	500
다. 법 제21조제1항제6호·제9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항(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	150	200	300